화성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

제정 2001. 3. 21. 조례 제16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.

③위원은 도서관 및 독서업무관련 과장급 공무원과 지역의 교육, 문화계인사 기타 도서관 및 독서업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.

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역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타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5조(회의)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년 1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.

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한다.

제6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

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) ①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되 도서관 관련분야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.

제8조(실비변상) 위촉위원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